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84 호 2023. 1. 26.(목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1회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2회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,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4회[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사항 고시]..... 7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18회[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]..... 8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11호

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20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연월일 : 2023. 1. 20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공업용수 노후관 갱생 및 정비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946번지 외 2개소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 - 가. 면 적
    - 1) 일시: 49.00m<sup>2</sup>
    - 2) 계속: 12.00m<sup>2</sup>
  - 나. 기 간
    - 1) 일시: 2023. 1. 20. ~ 2023. 12. 31.
    - 2) 계속: 2024. 1. 1. ~ 2028. 5. 31(영구)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
 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(5층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12호

#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,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5-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승인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26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사업계획승인

#### 가. 사업시행자

- 1) 사업의 명칭: 주택건설사업[공동주택 및 부대시설]
- 2) 사업주체
  - 가) 성 명: (주)케이엘앤디 대표 이병훈
  - 나) 주 소: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48, 3층 (주)케이엘앤디
- 3) 사업위치: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5-3번지 외 60필지

#### 나. 사업개요

구 분	내용	비 고
사업주체	(주)케이엘앤디	
사업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48, 3층 (주)케이엘앤디	
대지면적	14,790.0㎡ (공동주택 부지)	
건축면적	2,660.9965㎡	
연면적	64,515.3122㎡	
건폐율	17.99%	
용적률	291.15%	
동수(주/부)	4개동 / 2개동	
세대수	397세대	
주택형별	아파트(민영주택)	
사업비	199,330,010,000원	

2. 사업시행기간

- 2023. 01. ~ 2025. 05.

3.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의제사항

○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. (해당분만 포함)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의 결정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(단, 주택사업부지에 한함)
-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·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(단, 주택사업부지에 한함)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1조제1항 및 「교통영향평가지침」 제29조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변경신고
- 「자연재해 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소방동의

4. 승인관련서류: 울산광역시 북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□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

I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298	천곡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5-3번지 일원	-	증)19,794	19,794	구역신설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98	천곡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</li> <li>- A = 증) 19,794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·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</li> </ul>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1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 성 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9,794	-	19,794	100.0	
도시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8,814	-	18,814	95.1	
	자연녹지지역	980	-	980	4.9	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(1) 도로

(가) 도로 총괄표

류별	구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
합계		2	293	5,004	-	-	-	1	217	3,702	1	76	1,302
중로		2	293	5,004	-	-	-	2	217	3,702	1	76	1,302

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

(나)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 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 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2	628	17	집산도로	217 (217)	소로3-32	대로2-76	일반 도로			노선신설
신설	중로	3	488	12	집산도로	76 (76)	중로2-628	중로1-120	일반 도로			노선신설

■ 도로 결정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중로2-628	· 노선신설 L=217m, B=17m	·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
-	중로3-488	· 노선신설 L=76m, B=12m	·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	비 고
	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
신설	1	1B	14,790	1	북구 천곡동 525-3번지 일원	14,79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■ 변경사유서

도면번호	가구 또는 획지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1	1B-1	· 신설 A = 14,790m <sup>2</sup>	·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	
-	1B-1	용 도	허용용도	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50% 이하
		용적률 (기준/허용)		250% 이하 / 295% 이하
		높 이	최고높이	100m(29층)이하
			최저높이	-

■ 용적률완화

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	계획대상지												
<p>▪ 3-3-2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일반주거지역</th> <th>기준용적률(%)</th> <th>허용용적률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종</td> <td>150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>제2종</td> <td>200</td> <td>250</td> </tr> <tr> <td>제3종</td> <td>25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일반주거지역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	제1종	150	150	제2종	200	250	제3종	250	300	<p>1. 무상귀속 : 2,059.0㎡                  2. 신설 공공시설 : 5,004㎡                      - 도로 : 5,004㎡                  3. 완화용적률                      = 당해용도지역용적률 + [1.5×가중치×(공공시설부지×공공시설부지용적률)÷실사용부지]                      = 250 + [1.5×0.88×{(2,059×250) / 14,790}]                      = 295.94%                      ⇒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300%이하                      이므로 최대 허용용적률은 295%이하로 적용</p>
일반주거지역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											
제1종	150	150											
제2종	200	250											
제3종	250	300											
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계획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신설	-	1B-1	·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동측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	중로 2-628호선변
신설	-	1B-1	· 단지 내 비상차량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동측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	중로 2-628호선변
신설	-	1B-1	· 근린생활시설 주차 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동측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	중로 2-628호선변

Ⅲ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: 게재생략

Ⅳ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: 게재생략

V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2.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14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2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고시내역

협의 번호	협의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협의기간	점용목적
	성명 (생년월일)	주소				
제2023 -1호	울산복구청 문화체육과	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-16번지 일원	2,500	'23. 02. 04. ~ '23. 02. 06.	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운영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118호

##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(이하 “기본직불금”)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0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신청기간 및 방법 : 2023. 2. 1. ~ 4. 28.

※ 코로나-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(인터넷, 스마트폰)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

가. 비대면 : 2.1~2.28(1개월간),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

\* '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'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

나. 방문 : 3.2~4.28(2개월간),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신청

\*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, 신규신청자, 관외경작자, 농업법인 등

#### 2. 신청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

가.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
○ 과거의 쌀직불·밭직불·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\*을 충족한 농지

\* (쌀직불) '98~'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, (밭직불) '12~'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

(조건불리) '03~'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(초지는 제외)

- 다만, 농지전용 허가·신고 등, 임대차계약 종료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,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(폐경) 등은 지원에서 제외

## 나.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

- '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후계농업인·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, 신규신청자\*, 승계대상자\*\* 등

\*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.1ha(농업법인은 5ha)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,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(농업법인은 4500만원)

\*\* '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(①+②+③ 모두 충족)

- 다만,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 요건 미충족,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,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,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## 3.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

### 가. 소농직불금

-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

자격요건 항목	자격 기준
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	0.1ha 이상 ~ 0.5ha 이하
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	1.55ha 미만
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	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
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	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
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	2,000만원 미만
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	4,500만원 미만
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	5,600만원 미만
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	3,800만원 미만

\* 농가구성원 :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,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

관계증명서에서 (1) 배우자, (2)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, (3)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

\*\*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.5ha를 초과하나,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

**나. 면적직불금**

-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

**4. 지급단가**

가. 소농직불금 : 농가당 120만원

나. 면적직불금 :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·밭,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

(단위 : 만원/ha)

유형	구간 (면적)	1구간	2구간	3구간
		(2ha 이하)	(2ha 초과 ~ 6ha 이하)	(6ha 초과)
농업진흥지역 논·밭		205	197	189
농업진흥지역 밖의 논		178	170	162
농업진흥지역 밖의 밭		134	117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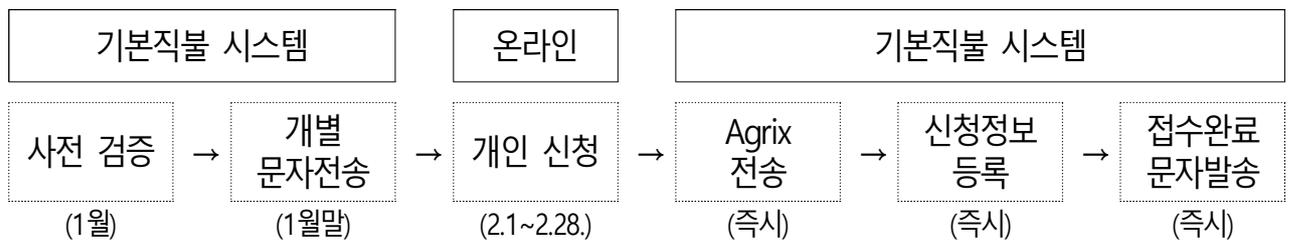
-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
  - \* (논) '98~'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, (밭) '12~'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 '03~'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(초지는 제외)
- 농업인은 30ha, 농업법인은 50ha,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
  - \* 다만,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

## 5. 신청방법

### 가. 사전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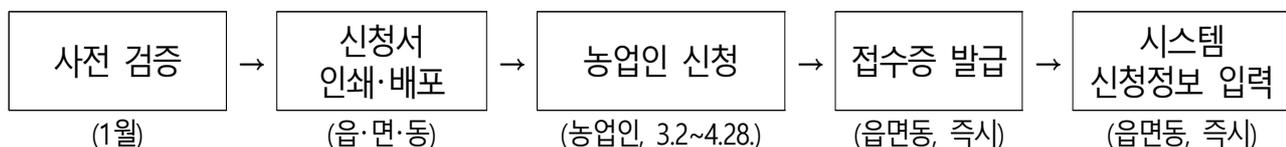
-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·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
- \*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(2월),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(4월, 2회)

### 나. 비대면 간편 신청



- 대상 : '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'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
- 신청기간 : '23. 2. 1. ~ 2. 28.
- 신청방법 :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, ARS) 간편 신청
- \*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·주민번호·핸드폰인증 →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→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, 금액 확인 → ④ 신청 확인
- 제출서류 : 없음

### 다. 방문 신청



- 대상 :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, 신규신청자, 농업법인 등
- 신청기간 : '23. 3. 2. ~ 4. 28.
- 신청방법 :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·면·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

쇄·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신청

\* 관할 읍·면·동 :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·면·동사무소

-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'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,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\*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

\* 농지가 아닌 토지(산지, 초지 등), 불경지(미관리 및 방치 등), 묘지, 폐기물·모래·자갈적치, 골재채취장·양어장, 건축물부지·주차장, 정원(조경수, 관목수 등 식재),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

-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·면·동에 제출

\*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. 향후 자동응답시스템(ARS)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

1)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

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-1에 기재

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(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)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) 배우자, 2)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, 3)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-2에 기재

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(신청인 기준)		※ "소농"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
④-1 주민등록상 세대원(세대주 포함) ※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		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
		-
		-
④-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※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-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.		
		-
		-

2)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, 소농직접지불금 선택

3)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

4) 뒷부분 하단의 "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"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

\*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

-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

- **제출서류** :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.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

구 분	제출서류
1. 등록신청서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필수</span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본직불 등록신청서( *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)</li> </ul>
2.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(임차농업인)를 <b>적법한 권원</b> 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필수</span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임대차계약이 <b>9.30일 이전에 종료</b>하거나 <b>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</b></li> <li>▶ 임대차계약의 신규·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·면·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</li> <li>*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▽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▽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</li> <li>▶ 다만, 중중소유 농지(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), 재산세 납부증명(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) + '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'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(~'24년)</li> </ul>
3. 승계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<b>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</b></li> <li>▶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: 주민등록등본(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)</li> <li>▶ 직전(지급)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
4. 신규대상자, 관외경작자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필수</span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농지소재지의 이·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(총 3인 이상)으로 발급받은 "경작사실확인서"</li> </ul>
5.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보다 적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<b>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</b></li> <li>▶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: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계약서,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,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</li> <li>▶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: 시스템 확인, 임대차계약서</li> <li>▶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농지전용 관련 자료, 시스템 검증</li> <li>▶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: 「농지법」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</li> </ul>

- **제출방법** :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·면·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·통장 등을 통

하여 대리 신청 가능

-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·면·동에 제출하고 9.10일 이내 보완

## 6. 유의 사항

### 가. 코로나-19 방역 수칙 준수

- 관할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-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
- 읍·면·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

### 나.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

-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·면·동에 9.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
- 농지 분·합필 등으로 추가·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
-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
- \*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

### 다.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

-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\*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
-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,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\*

\*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,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(1644-8778)에 문의하시거나, 농림사업정보시스템([www.agrix.go.kr](http://www.agrix.go.kr)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